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0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민병덕
이정현 · 강준현 · 홍기원
안도걸 · 박희승 · 모경종
한병도 · 윤준병 · 김태년
박지원 · 정진욱 · 서영교
의원(15인)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시가 지역별·계층별로 불균형하며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특히 청소년, 이주배경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

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인권약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노동관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

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함(안 제13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며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노동관 형성 및 노동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국민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노동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헌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규정과 노동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국민의 노동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외의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

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국가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 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동인권교육주간)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